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8.10.23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위례택지개발지구 A1-2BL 주택건설사업/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A1-2BL		
의결번호	2018-21-3	심의결과	조건부보고완료
[심의 내용] 건축 심의			
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			
< 건축 분야 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			
○ 근린생활시설(상가동)의 경사면을 따라 변화와 균형있는 입면으로 개선 바람.			
○ 지하주차장 출입동선은 피난 안전을 고려하여 피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층간 이동 램프 위치를 조정하거나 추가 계획 바람.			
○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 인정함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			
○ EPS, TPS, PS 등 층간방화계획은 화재시 상부층 연기 침투 방지를 위하여 상세도면 표기 바람 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교통			
○ 단지 출입구 주변 상층 및 엇갈림 문제를 고려하여 드롭존 위치를 회전교차로 내로 이전 바람.			
< 공통사항 >			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			
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우수(그린2)등급 적용			
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: 주거 1등급, 비주거 2등급 적용			
다.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.51%, 비주거 7.0%			
- 계속 -			

2018.10.23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8.10.23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위례택지개발지구 A1-2BL 주택건설사업/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A1-2BL		
의결번호	2018-21-3	심의결과	조건부보고완료

[심의 내용] 건축 심의

< 공통사항 >(계속)
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.
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
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
 - 1) 대지면적 1,000m²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m²이상의 건축물.
 -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
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

2018.10.23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